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11. 30 선고 2018가단1019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 나, 다, 라,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0㎡ 지상 가건물, 같은 도면 표시 마, 바, 사, 아, 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0㎡ 지상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'콘테이너' 박스 1개를 수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단근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임선지

별지